

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 암사동유적 관람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|
| 의안 번호 | 83 |
|----------|----|

제출년월일 : 2019. 2.

제 출 자 : 강동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유적 운영 규정」에 규정되어 있는 서울 암사동유적 주차장 사용료 징수대상, 면제 및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라 조례 형식으로 정비하여 관련 미비점을 바로 잡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.

2. 주요내용

가. 관람료 및 관람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 (안 제2조 및 제3조)

나. 주차장 사용료 징수대상 및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 및 제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 및 제139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

(1) 전문: 별첨

(2) 입법예고(2018. 11. 21. ~ 2018. 12. 11.) 결과: 의견없음

(3) 규제심사: 원안동의

(4)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동의

(5)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: 원안동의

(6) 아동영향평가 결과: 원안동의

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 암사동유적 관람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 암사동 유적 관람료 징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 암사동유적 관람료 및 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 및 제13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 암사동유적 관람료 및 주차장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관람료) ① 서울 암사동 유적(이하 “유적”이라 한다)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별표와 같다.

제3조(관람료의 면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한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
2. 6세 이하의 어린이, 65세 이상의 노인
3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
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
5. 「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

6. 그 밖에 구청장이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4조(주차장 사용료 징수대상) 유적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료를 면제한다.

1. 공무수행 중인 관용자동차
2. 언론 보도 자동차
3. 「도로교통법」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
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소유의 자동차 중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
5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3조에 따라 적용을 받는 자 소유의 자동차 중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
6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 소유의 자동차 중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
7. 「장애인복지법」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중 장애인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
8. 화장실, 매점 등을 이용하기 위하여 10분 이내로 주차하는 자동차
9. 행사 또는 업무관계로 주차하는 자동차

제5조(주차장 사용료 징수방법 및 기준) ① 주차장 사용료 징수방법은 선불제로 하며 징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으로 등록되어 스티커가 부착된 10명 이하의 비사업용 자동차는 주차장 사용료를 20퍼센트 감면한다.

1. 경 차 : 주차시간에 관계없이 주차장 운영시간 내 1일 1,000원
2. 소형차 : 주차시간에 관계없이 주차장 운영시간 내 1일 2,000원
3. 대형차(25인승 이상) : 주차시간에 관계없이 주차장 운영시간 내 1일 4,000원

② 월정기권 이용자에 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별표 1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서울 암사동 유적 관람료(제2조 관련)

| 대 상 | 요 금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|
| | 개인 | 단체(30명 이상) |
| 어른 (19세 ~ 64세) | 500원 | 400원 |
| 어린이 및 청소년 (7세 ~ 18세) | 300원 | 200원 |

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 암사동유적 관람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- 예산증감 세부내역 (단위 : 천원)

| 구 분 | | 현행 | 개정 후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|
| 세입 | 서울 암사동 유적 주차장(공단) | 31,710 | 31,710 | |
| | 소계(a) | 31,710 | 31,710 |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총 비용 | | 0 | 0 | |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8조제2항제1호
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
총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본 조례안은 「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유적 운영 규정」으로 되어
있는 서울 암사동유적 주차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형식
으로 정비하여 관련 미비점을 바로 잡고자 이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
특별한 세출비용 발생사항은 없으므로,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

4. 작성자

문화예술과장 강문수(☎ 02-3425-7115)